

67.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년 9월 2일
- 제출자 : 전경원 의원, 권기훈 의원, 김정옥 의원, 류종우 의원,
박소영 의원, 윤권근 의원, 이재숙 의원, 이재화 의원,
임인환 의원, 하중환 의원
-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 상정일자 : 제29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2년 9월 19일), 원안가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전경원 의원)

□ 제안이유

-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및 추진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대안교육기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실시 기관·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7조)
-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의 위탁 등을 규정함(안 제8조)

3. 검토보고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노인만)

-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각 조문별 주요 내용 및 검토결과
 - ▶ 본 제정조례안은 10개 조문과 2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음
 -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가 있는 위기학생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강화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생의 소질·적성 개발 중심의 다양한 교육을 하는 대안교육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에서는**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 학령기 학생들의 학업중단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청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사회적 자립을 저해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비행이나 범죄 등의 문제로 인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교육감의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시책 강구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세부 추진사업을 명시함

-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맞춤형 교육기회 보장으로 학업중단을 원천에서부터 예방하고, 공교육 내에서도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이 필요할 것임

- 아울러, 현재 교육청에서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다품 대안교육’의 전반적인 운영실적, 만족도 및 향후 개선방향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보다 나은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안 제7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실시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본 조례의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예산 지원기준에 대하여는 대안교육기관 설립형태, 운영, 시설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임
- 아울러, 예산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등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는 만큼 교부 및 정산 시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과 사후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임
- ▶ **안 제8조**에서는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사업을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
 -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위탁 대상기관 선정 시 신중하고 면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안 제9조**에서는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은 관련법률 및 지원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청소년의 학업중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맞춤형 대응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종합 검토 결과

- ▶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사전에 방지하고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예방사업 추진,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음
- ▶ 다만, 최근 5년간 학업중단 학생 현황에서 나타나듯이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감소추세의 학업중단 학생수가 일선학교 등교 수업이 재개된 이후 다시 늘어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 및 학업 복귀 지원을 통해 학업 중단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최근 5년간 학업중단 학생 현황 】

(단위: 명)

구 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전체 학생 수	전국	5,725,260	5,584,249	5,452,805	5,346,874	5,323,075
	대구	280,265	269,570	259,606	250,957	247,137
학업중단 학생 수 (비율)	전국	50,057 (0.87%)	52,539 (0.94%)	52,261 (0.96%)	32,027 (0.60%)	42,755 (0.80%)
	대구	1,948 (0.70%)	1,936 (0.72%)	1,933 (0.74%)	1,211 (0.48%)	1,630 (0.66%)

- ▶ 아울러, 사회 문화의 다변화, 다양화로 인해 공교육 내에서도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대안 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안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수정안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